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05 |
|----------|-----|

2024. 1. 30.(화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4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24일

(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시책추진 등 교육감 책무(안 제3조)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(안 제4조)
- 퇴직교직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5조)
-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사항(안 제6조)
-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항(안 제7조)
-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신원호)

가. 조례 제정 이유

- 1970년대만 해도 평균수명이 60세 전후였지만 지금은 80세가 넘으며,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사는 시대임. 또 과거와는 다르게 퇴직자들의 정신 및 신체 나이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함
- 최근 교직원의 명예퇴직 증가로 저연차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, 학교 업무가 세분화·전문화 되면서 돌봄, 다문화 학생 한글 교육, 경계선 학생 학습 지도, 독서 지도 등 다양한 업무에서 퇴직교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음

- 이에 일하고자 하는 퇴직교직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재능기부로 미래세대 학생들 또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 됨

나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-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사료 됨
- 안 제2조에는 퇴직교직원의 개념을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, 충청북도 소재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행정직, 교원 등 공무원과 사립 유치원·학교 교직원,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
-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마련하게 하였고
- 안 제4조에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 내용에 학생교육 지원, 평생교육 지원,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 뿐만 아니라 행정직,

공무직 등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영역을 넓히고, 봉사한 분들을 위한 교통여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됨

- 안 제5조에는 퇴직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학교 현장과 봉사하고자 하는 퇴직교직원들을 매칭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퇴직교직원 센터를 설치,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능 기부 등의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 됨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퇴직교직원 활용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하고,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
-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제정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이 평생 닦아온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 지원 등 교육활동에 다양한

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

- 현대 의학의 발달은 인간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시켰고, 퇴직자들은 은퇴 후 늘어난 여유시간을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공부 하거나, 봉사 하거나, 일하려는 신중·장년들도 많아져 최근 많은 지자체는 신중년, 중장년 인생이모작(일자리) 지원 조례를 제정^{2024년 1월 현재 80여곳} 하고 있음
- 이에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퇴직교직원들이 직장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사회(학교 등)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퇴직교직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며,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퇴직교직원 활동사업의 범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주 대상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, 현직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퇴직교직원의 직무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. 또한 유사 교육과 관련한 상위법과 비교하여 결격사유, 자격, 범죄경력 조회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
-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

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

< 붙임 >

부산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사례

□ 목적

-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
- 단위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학생의 학습심리·정서 결손 해소

□ 주요내용

○ 운영 범위

-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대상

○ 방침

-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면하여 학습·상담을 진행할 경우, 봉사자를 퇴직 교직원으로 한정
- 퇴직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으로 전 업무 프로세스 처리

○ 센터 역할

- 봉사자 매칭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
-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이 가능한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및 관리
- 퇴직교직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상호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

○ 2022년 주요 사업 실적

| 구분 | | 내용 |
|-------|-----|--|
| 주요 사업 | | • 수요기관-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매칭 및 학교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(8개 사업) • 교육활동 지원 사업별 역량강화 연수 및 활동 평가회 실시 |
| 지원 형태 | | -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위촉(근로관계 아님) • 교육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등의 실비 지원 가능 • 봉사시간 4시간 미만 : 1만원, 4시간 이상 2만원 |
| 현황 | 매칭 | • 8개 사업, 161교에 196명 매칭, 10,598회(43,275시간) 교육활동 지원 ※ 수업대체 인력 배치: 인력풀 425명, 1,292건 매칭 |
| | 인력풀 | • 704명 (초등: 254명, 중등: 412명, 특수: 2명, 일반직: 29명, 기타: 7명) |
| | 연수 | • 사업별 역량강화 연수 등 맞춤형 연수 기획 및 운영(32회) |

□ 센터 운영

○ 인력 구성

- 센터장, 부센터장 (교육감 위촉, 1년 단위, 연임 가능, 봉사활동비 지급)
- 사업 담당 팀장 (센터장 위촉, 봉사활동비 지급)
- 교육청 직원: 1명 파견, 1주일 3일 근무 (화, 수, 금 근무 / 월, 목 교육청 근무)

○ 사무 공간: 교육청 직속기관 공유재산 활용 (1실)

○ 2023년 소요예산 : 약 2억 9천만 원 (봉사활동비, 연수비 등)

○ 봉사비 지급 기준

- 교육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,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가능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근무지내 출장 여비 기준 준용, 활동일에 따라 지급
4시간 미만: 일 10,000원, 4시간 이상: 일 20,000원

□ 지원 영역

| 연번 | 구분 | 사업명 | 횟수 | 사업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
| 1 | 교과 활동 지원 | 기초학력 증진지원 | 주 1~5회 | 각 교과별 기초적, 기본적 요소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개별지도 (국어 사용 능력, 수리 능력 보완 등) |
| 2 | | 독서교육 활동지원 | 주 1~5회 |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(방과후학교 수업 대기 시간 등 활용, 독서활동 지도,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) |
| 3 | | 학교생태 교육지원 | 주 1~2회 |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지원 (생태교육 학습 자료 준비, 교재 생물원 조성 지원 등) |
| 4 |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| 인성교육 지원 | 학교별 상이 | 학생의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 함양 및 심리·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개별 상담 진행 (선도처분 학생, 학교부적응학생 대상 갈맷길 동행 프로그램) ※참여한 학생에게는 참여시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|
| 5 | | 다문화 교육지원 | 주 1~5회 |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(다문화 이해교육, 한국어교실 운영, 다문화학생 외국어 학습 지원 * 다문화교육 행사 지원 등) |
| 6 | | 안전교육 지원 | 주 1~5회 |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·체험활동·실습 시 학생 대상 안전 지도 (현장체험활동 지원, 실험실 안전 지도 등) |
| 7 | | 동아리 활동지원 | 주 1~3회 | 학생들의 발달 수준,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(예술체육 교육, 전래놀이 지도 등) |
| 8 | 기타 교육과정 운영 지원 | 주 1~5회 |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수시 지원 (학습준비물, 방과후 연계형 돌봄, 복도감독, 장애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** 등) | |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퇴직교직원”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사업 등)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3.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퇴직교직원센터 설치·운영)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자원봉사 관련 단체,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유아교육법 [2023. 9. 27. 일부개정]

○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4. 삭제 <2012. 3. 21.>
5. 삭제 <2012. 3. 21.>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○ 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0. 3. 24.>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□ 초·중등교육법 [2022. 12. 27. 일부개정]

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○ 제19조(교직원의 구분)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고등공민학교 ·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· 교감 ·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. 다만,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.

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.

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(校務)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.

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 · 감독기관(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이 정하며,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○ 제20조(교직원의 임무)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도 · 감독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·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

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
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□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[2023. 2. 3. 일부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,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보조·보좌기관 등 직급)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1.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의 부교육감, 국장, 과장, 담당관
 - 2. 교육지원청의 국장, 과장
 - 3.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

- 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① 교육감,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, 감사,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.
 - ② 본청의 과·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4조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붙임]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 개요
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시 비용 발생

3. 관련 조문

-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(안 제4조)

제4조(활동 사업 등)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3.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4. 비용추계 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.
-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.
-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·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퇴직교직원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 시 발생하는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등을 추계함
 - ※ 향후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활성화에 따라 증·감될 수 있음

나. 추계 결과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」 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150,000천원이 소요되고, 향후 5년간 750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〈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〉
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 | 합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| 750,000 | 150,000 | 150,000 | 150,000 | 150,000 | 150,000 |

다.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

- 퇴직교직원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운영(안 제4조)

1) 퇴직교직원의 각종 교육활동 지원

- 소요예산(안): 150,000천원

- 자원봉사료 100,000천원, 20,000원×50명×100일
 - ※ 자원봉사자 예산 편성 내부기준[예산과-6647(22.09.19.)]
- 운영비 50,000천원(교육활동 지원 관련 비용 등)